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자 본 시 장 과 금 융 투 자 업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차원에서 투자일임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징구주기 완화(안 제63조제1항)

투자권유자문인력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연별로 완화함.

나.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 완화(안 제88조제1항)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현행 3개월 1회 이상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함.

다.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안 제91조제4항)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의 예외 마련(안 제99조제1항)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범위 확대(안 제249조의12제1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를 현행 지분증권 전체에서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으로 축소함.

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영 허용(안 제249조의23제1항·제5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영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규정함.

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시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안 제253조제1항, 제282조제1항)

현재 하위법령을 통해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한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1.0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 목의 주기별(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투자권유자문인력(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 월별

나. 투자권유자문인력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연별

다.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 분기별

제88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9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주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7조의7제1항 중 “제66조”를 “제63조제1항, 제66조”로, “제77조의3 및 제78조”를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로 한다.

제249조의12제1항제3호 중 “지분증권”을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으로 한다.

제249조의15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9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49조의23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53조제1항 중 “제3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82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

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별표1 제102호 중 “제91조제3항”을 “제91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집합투자규약”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등”로 한다.

별표1 제277호 중 “제280조제5항”을 “제280조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4항 및 제9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53조제1항 및 제28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p> <p>1. ~ 2. (생략)</p> <p>3. 매매명세를 <u>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u></p> <p>&lt;신 설&gt;</p>	<p>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 ----- -----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다음 각 목의 <u>주기별(이하 이 조에서 같다) -----.</u></p> <p style="margin-left: 40px;">가. <u>투자권유자문인력(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 월별</u></p> <p style="margin-left: 40px;">나. <u>투자권유자문인력 중 직</u></p>

4. (생략)

② ~ ③ (생략)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 ③ (생략)

<신설>

무수행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연별

다.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 분기별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  
-----  
-----  
-----6개월-----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78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⑩ (생략)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 7. (생략)

-----  
----- 제63조제1항, 제66조-----  
-----  
----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  
-----  
-----
4. ~ 7. (현행과 같음)



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  
-----  
-----, <단서 삭제>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 ⑤ (생략)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신설>

3. ~ 7. (생략)

② ~ ③ (생략)

-----  
-----  
----- 제1  
호 및 제3호-----  
-----.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 2100 - 2662